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5.31.(화) 석간 2022.5.31.(화) 06:00	배포 일시	2022. 5.30.(월) 오후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30)
		담당자	사무관 류충현 (044-200-5540)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꽃게, 낙지를 잡지 마세요

- 6월부터 꽃게, 낙지, 수컷대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월부터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게(<i>Chionoecetes spp.</i>)	꽃게(<i>Portunus trituberculatus</i>)	낙지(<i>Octopus minor</i>)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가 특정한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못하는 기간인 금어기를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총 44종의 어류와 패류 등에 대해 금어기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월에는 꽃게와 수컷 대게*, 낙지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 된다.

*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 금지

** 6월 금어기가 시작되는 어종 및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품 종	포획금지기간
수컷대게	6.1~11.30	펄닭새우	6.1~8.31
꽃게	6.21~8.20 (서해5도 일부 해역 7.1~8.31)	소라	6.1~8.31(전남 여수 삼산면,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경북 울릉군)
참홍어	6.1~7.15	새조개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무안·영광 제외), 제주 6.1~9.30)
낙지	6.1~6.30 (충남 가로림만·근소만 4.1~5.31/ 전남·인천·경기 6.21~7.20 / 경남 6.16~7.31)		

수컷 대게는 6월 1일(수)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 동안 잡을 수 없고, 꽃게는 6월 21일(화)부터 8월 20일(토)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금)부터 8월 31일(수)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일명 외포란 꽃게라고 불리는 외부에 알을 품은 꽃게는 자원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낙지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이동범위가 좁은 낙지의 특성을 고려해 경상남도는 6월 16일(목)부터 7월 31일(일)까지의 기간을, 전라남도과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6월 21일(화)부터 7월 20일(수)까지의 기간을 별도의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근소만은 4월부터 5월까지가 낙지 금어기여서 6월부터 내년 3월까지의 가로림만과 근소만에서 낙지를 잡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참홍어, 소라, 필담새우, 새조개 등 4개 어종의 금어기도 6월부터 시작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상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www.수산자원보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종별 산란기와 생육기를 금어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어업인과 낚시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금어기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금어기·금지체장



월	1월	3월	4월	5월
품 종	명태, 대구	가리비	살오징어, 털게, 고등어, 코끼리조개	감성돔, 삼지, 참문어
포획금지기간	1.1~12.31, 1.16~2.15	3.1~6.30	4.1~5.31(단, 근해체납기, 연안복합, 정치망 4.1~4.30), 4.1~5.31(강원), 4.1~6.30 중 1개월, 4.1~7.31(강원, 경북)	5.1~5.31(신설), 5.1~5.31(신설), 5.16~6.30(신설) (사·도지사는 5.1~9.15중 46일 이상을 설정가능)
포획금지체장	35cm		15cm, 7cm(강원), 21cm	25cm

월	6월
품 종	대하, 전어, 대갈, 갈태, 곰피, 말쭝지, 주꾸미, 낙지, 참홍어, 꽃게, 소라, 멸달새우
포획금지기간	5.1~6.30, 5.1~7.15(단, 강원, 경북 제외), 5.1~7.31, 5.1~7.31(제주 연중), 5.1~7.31, 5.1~7.31, 5.11~8.31, 6.1~6.30 (지자체 별도 고시 가능), 6.1~7.15, 6.21~8.20(단, 연평 등 서해5도서 7.1~8.31), 6.1~8.31(전남, 제주), 7.1~9.30(제주 추자면), 6.1~9.30(울릉)
포획금지체장	18cm, 42cm, 6.4cm, 5cm(제주 7cm), 10cm

월	7월
품 종	새조개,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백합, 개서대, 담새우, 오분자기, 키조개, 붉은대게, 옥돔
포획금지기간	6.16~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9.30), 6.1~11.30, 7.1~7.31 (근해체납기, 연안복합 제외), 7.1~7.31(단, 유자망 4.22~8.10), 7.1~7.31, 7.1~8.20, 7.1~8.31, 7.1~8.31, 7.1~8.31, 7.1~8.31, 7.10~8.25 (단, 강원연안지방 6.1~7.10), 7.21~8.20
포획금지체장	9cm, 18cm(항문장), 15cm, 5cm, 26cm, 5cm, 4cm(제주), 18cm(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품종	돔부기	전복류	넙치	도박류	연어	톳	취노래미	개다시마	우뚝가사리	문치가자미			
포획금지기간	8.1~9.30	9.1~10.31(제주 10.1~12.31)	9.1~11.30(제주) (단, 제주도 고시로 5.1~11.30 중 3개월 이상 지정 가능)	10.1~익년 4.30	10.1~11.30	10.1~익년 1.31	11.1~12.31	11.1~익년 1.31	11.1~익년 4.30	12.1~익년 1.31			
포획금지체장		7cm(제주 10cm)					20cm			20cm (단, 3년간 17cm)			

규 제	금 지 체 장
품 종	기름가자미, 기수재첩, 갯장어, 납지, 농어, 도루묵, 대문어, 돌돔, 미가치, 민어, 방어, 볼락, 봉장어, 용가자미, 조피볼락, 참가자미, 참돔, 청어, 황돔, 황복
포획금지체장	20cm (단, 3년간 17cm), 1.5cm, 40cm, 35cm, 30cm, 11cm, 600g, 24cm, 40cm, 33cm, 30cm, 15cm, 35cm, 20cm (단, 3년간 17cm), 23cm, 20cm(단, 3년간 17cm), 24cm, 20cm, 15cm, 20cm

* 빨간색 : 2021.1.1부터 변경되는 어종

수산동물의 종류별 제장 계획도

어류

갑각류

오징어류

패류

암컷 포획금지 4종

품종	포획금지기준	품종	포획금지기준
꽃게	복부 외포란 암컷	대게	암컷
민꽃게		붉은대게	

(수산자원관리법 제6조 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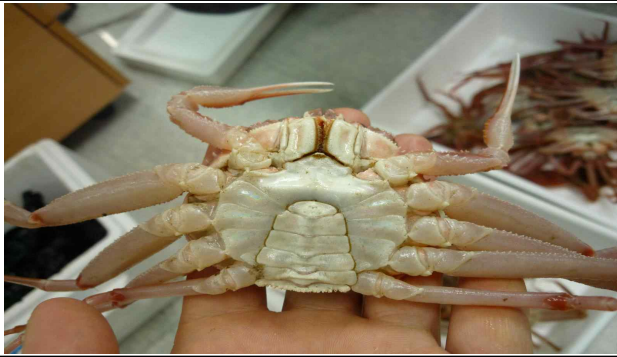
② 문치가자미, 참가자미, 용가자미, 기름가자미의 경우 '21.1~'23.12.31까지는 17cm 이하 적용, '24.1.1부터는 20cm 이하 적용

②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② 개정 어종의 경우, '21.1부터 시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20.9.22 공포 및 11.10 공포)

참고 2

대게와 꽃게 포획금지규정



대게 수컷 사진



대게 암컷 사진



꽃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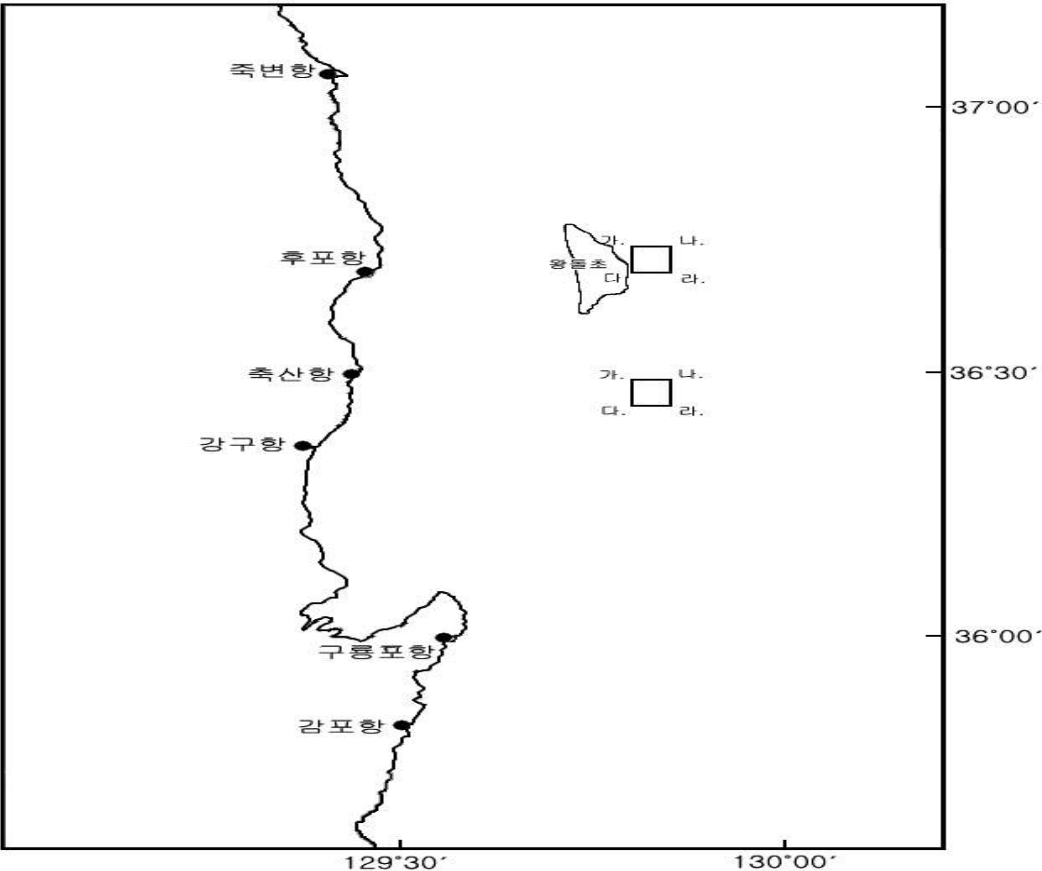
위판용 꽃게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대게류(붉은 대게는 제외한다)	<i>Chionoecetes spp.</i>	1)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만, 동경131도30분 이동수역은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하고, 북위38도34분09.68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경리 해안선의 교점, 북위38도34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동경128도30분06.89초의 교점, 북위38도33분09.69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2) 주5) 및 주6)의 해역에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5)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44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41분, 동경129도51분 주6)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가.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48분 나. 북위36도29분, 동경129도51분 다.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48분 라. 북위36도26분, 동경129도51분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간. 해당 기간 중에 꽃게를 어획량의 5퍼센트 이상 포획·채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업,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대형트롤어업 및 근해안강망어업은 제외한다. (해양수산부 고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만, 「어선안전조업규정」 제5조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대청·소청도 주변어장 및 같은 규정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서해 특정해역내에서의 어업별조업구역과 기간’ 제1호 가목의 대청도 어선 어업구역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대게포획 금지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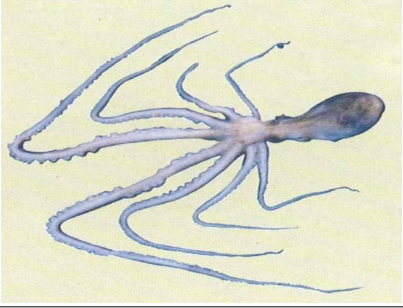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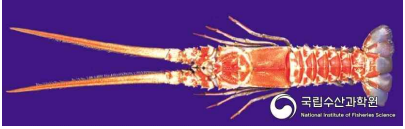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물종류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대게	<i>Chionoecetes opilio</i>	9센티미터 이하
꽃게	<i>Portunus trituberculatus</i>	6.4센티미터 이하

참고 3

참홍어 · 낙지 · 펼닭새우 포획금지규정

		
참홍어	낙지	펼닭새우

□ 포획·채취 금지 기간(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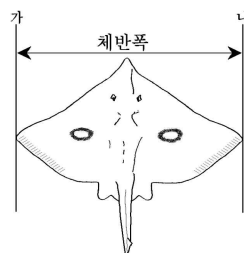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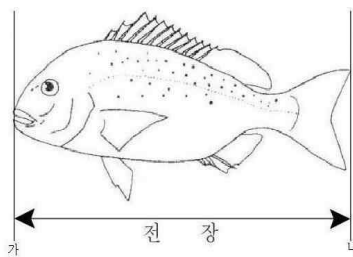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수심
참홍어	<i>Raja pulchra</i>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낙지	<i>Octopus minor</i>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다만, 시·도지사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으로 한다. (지자체별 고시: 인천·전남·경기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수산동식물	학명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참홍어	<i>Raja pulchra</i>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펼닭새우	<i>Linuparus trigonus</i>	10센티미터 이하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측정도

[어 류]



[갑 각 류]

